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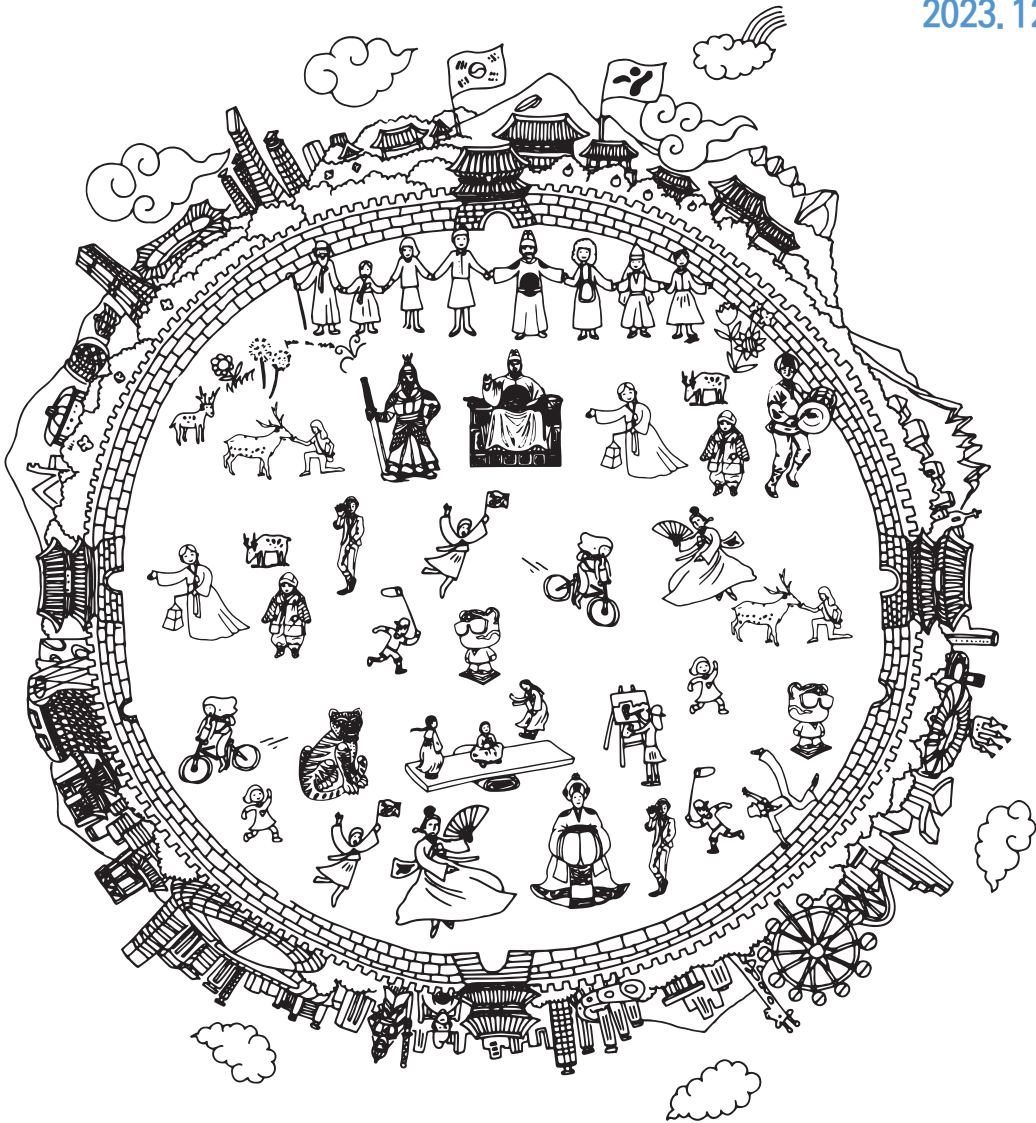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34호
2023. 12. 8.(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341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3-341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2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41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재편

-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 市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기획·조정을 위해 ‘도시공간기획관’ 및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재창조과’ 신설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 폐지에 따라 ‘동남권사업과’ 신설 및 도심재창조과 폐지(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
- (시민건강국)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관련 업무량 감소에 따라 ‘의료자원과’ 폐지 및 코로나19 후속 업무 ‘감염병관리과’로 이관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5급 상당)’를 ‘대기환경연구부(4급 상당)’로 재편
- (행정국) ‘남북협력과’ → ‘평화기반조성과’ 명칭변경 및 갈등관리 사무 이관, 교류협력 분야 사무조정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공급자 관점의 정책적·기능적 명칭에서 시민친화적 명칭으로 변경 및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신설,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 조정 등

나. 기구 명칭 변경 및 실국 간(내) 사무분장 정비 등

- (경제정책실) 창조산업 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구 명칭변경 및 부서 편제순서, 사무분장 조정
 - ‘신산업정책관’ → ‘창조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창조산업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대학창업과’, ‘전략산업기반과’ → ‘산업입지과’, ‘바이오AI산업과’ → ‘첨단산업과’ 명칭 변경
- (기획조정실) 시정비전 수립 관련 사무 이관(창의행정담당관→기획담당관) 및 갈등관리 사무 신설(평가담당관)
- (기술심사담당관)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하자 총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사무 신설 ※ 부실공사 대응 관련 주택정책실 내 전담 팀 신설 별도
-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곤충산업 관련 법률 및 관련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신규사무 추가 및 부서 업무분장 조정

다.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

- 대변인의 개방형 직위(2호) 신규 지정
-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명 변경 : 비전전략수석 → 비전특보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로, “정책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 “정책특보, 비전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뉴미디어”를 “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서울브랜드담당관·민원담당관”을 “홍보담당관·콘텐츠담당관·서울브랜드담당관·민원담당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을 “콘텐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뉴미디어담당관”을 “콘텐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월간지 등 발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제10호(중전의 제18호) 중 “‘찾아가는 서울시청’”를 “‘명예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미디어담당관”을 “콘텐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시청방송의 운영

22. 시청 동영상 및 사진자료 확충 관리

제10조제5항제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경제일자리기획관·신산업정책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뷰티패션산업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전략산업기반과·국제교류과·금융투자과·바이오AI산업과”를 “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창업과·금융투자과·첨단산업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국제교류과·산업입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산업정책관”을 “창조산업기획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국제교류과장·금융투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바이오AI산업과장”을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창업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국제교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뷰티패션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산업정책관은 국제협력 및 신산업”을 “창조산업기획관은 창조산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략산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총괄

18. 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

제11조제7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2항, 제13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

⑧ 대학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2. 대학 창업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청년 창업 및 대학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 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서울 지역 대학, 민간기관, 해외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중전의 제8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2항(중전의 제8항)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도시형제조업”을 “도시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도심제조업”을 “도시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도시형제조업”을 “도시제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캠퍼스타운 정책 협의회”를 “서울바이오허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을 “서울 AI 허브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0.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양자 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산업기반과장”을 “창조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략산업”을 “서울 창조산업”으로, “사항 총괄”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를 “웹툰·만화·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3.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운영
4. 게임·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운영
5. 1인미디어 허브 조성 및 산업 지원
6. 웹툰·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조성
9. 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제11항제10호 중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6호)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AI산업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을 “산업단지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을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AI양재 허브 육성”을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양재R&D 캠퍼스 조성”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대외협력,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1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의료자원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의료자원과장·식품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1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16.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17. 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제7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8.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1항 중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남북협력과”를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시민협력과·대외협력과·평화기반조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협력과장·남북협력과장”을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시민협력과장·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9.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11.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통일기반조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2호로 한다.

3. 평화·통일 안보 교육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도시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수집·보급”을 “수집·보급,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설사업 관련 평가업무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공공·민간)
18. 설계심의 이행관리 자문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를 “(도시공간본부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을 “도시공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시공간본부에 도시공간기획관·도시공간전략과·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도시재창조과·신속통합기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를 둔다.
- ③ 도시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정책, 도시계획정책,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시관리정책, 도시계획시설 정책, 토지관리정책 등에 관하여 도시공간본부장을 보좌한다.
-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항권역 고도제한 기준 및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운영·관리,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보행일상권 조성기준 수립·조정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제21조제8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재창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8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3호) 중 “수도권정비계획”을 “역세권활성화 전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4호) 중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지생태도시 재창조 전략에 관한 사항
 3. 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정책결정 및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도시공간계획의 수립·조정
 7. 입체·복합도시 조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공간 사업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1조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1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1항(중전의 제9항) 제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보전에”를 “생태포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중전의 제19호) 중 “입체적 공간이용의”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공간이용”으로 한다.

8. 학교(폐교, 이적지, 복합화, 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및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중 “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도심재창조과·도시정비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광화문광장사업과·동남권추진단을”을 “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도시정비과·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광화문광장사업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을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으로, “도심재창조과장·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을 “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심재창조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도심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등포 경인로·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8.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정비과장”을 “동남권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을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1. 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1조제1항 중 “운영기획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및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운영기획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환경연구부장·생활환경연구부장”을 “물환경연구부장·생활환경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은 지방환경연구관”을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한다.

제47조,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50조의2를 제49조의2로 한다.

제47조(중전의 제50조)의 제목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대기환경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질분석센터장”을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8호 중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을 “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를 “도시농업전문가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을 “학교원 예프로그래밍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제54조제4항제3호 중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를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4-H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한다.

7. 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음식교육 및 농업·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

9. 서울시 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0조”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0조”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73조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제1호 중 “상수도시

설 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수도 배급수 운영 및 상수도관로 교체, 갱생, 신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도관망시설의 세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급수탑·소화전 등) 위탁업무
12. 음수대 및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제75조제7항제2호 중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의 공사관리”를 “송수관·배수관·급수관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를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취수·송수 유량계 및 구역유량계”를 “정수장·배수지 등 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0.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2.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5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점검”을 “점검 및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수도 안전관리 총괄 및 점검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79조제1항 중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와 및 정수시설과를, 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적정성”을 “적절성”으로 한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제8호, 제13호 및 제17호 서식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별지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별지제4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제6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 제2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⑯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 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 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표 구분란 및 분임총괄관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⑱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 별지제74호서식, 별지제75호서식, 별지제76호서식, 별지제78호서식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 제63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별지제60의2호서식, 별지제63호서식, 별지제63의2호서식,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65의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
- ⑲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9항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제43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⑳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표 관련부서란, 별표2 재난수습 주무부서표 수습주무부서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 별표 1의 의료·방역반의 관련부서란 기호(-) 중 “스마트건강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를 “스마트건강과”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뉴미디어담당관” 을 “콘텐츠담당관”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① (생략)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생, 정무, 정책,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비전 수립, 디지털, 문화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u>정책특보</u> ,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u>마케팅전략수석</u> , <u>비전전략수석</u> , <u>디지털수석</u> , <u>문화수석</u> 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u>정책특보</u> ,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u>마케팅전략수석</u> , <u>비전전략수석</u> , <u>디지털수석</u> , <u>문화수석</u>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 ----- ----- <u>정책특보</u> , <u>비전특보</u> , <u>정무수석</u> , <u>미디어콘텐츠수석</u> , <u>마케팅전략수석</u> , <u>디지털수석</u> , <u>문화수석</u> ----- ----- <u>정책특보</u> , <u>비전특보</u> , <u>정무수석</u> , <u>미디어콘텐츠수석</u> , <u>마케팅전략수석</u> , <u>디지털수석</u> , <u>문화수석</u>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
제4조(대변인) ①·② (생략)	제4조(대변인)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의 대변인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홍보기획관) ① (생략)	제5조(홍보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홍보기획관은 홍보, <u>뉴미디어</u> , 서울브랜드, 민원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② ----- <u>콘텐츠</u> ----- ----- -----.
③ 홍보기획관 밑에 <u>홍보담당관</u> · <u>뉴미디어담당관</u> · <u>서울브랜드담당관</u> · <u>민원담당관</u> 을 두고, 홍보담당관·서울브랜드담당관·민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u>뉴미디어담당관</u>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u>홍보담당관</u> · <u>콘텐츠담당관</u> · <u>서울브랜드담당관</u> · <u>민원담당관</u> ----- ----- ----- <u>콘텐츠담당관</u> ----- ----- -----.

현행	개정안
④ 제3항의 뉴미디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콘텐츠담당관----- ----- -----.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청방송의 운영	<삭제>
7. 시정 동영상 및 사진자료 확충 관리	<삭제>
8. ~ 11. (생략)	6. ~ 9.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청책토론회, 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시민발언대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3. ~ 17. (생략)	11. ~ 15. (현행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신설>	18. 월간지 등 발행에 관한 사항
18.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에 관한 사항	10. 명예시장 -----
19. · 20. (생략)	16. · 17. (현행 제19호 및 제20호와 같음)
⑥ 뉴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콘텐츠담당관-----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월간지 발행에 관한 사항	<삭제>
<신설>	21. 시청방송의 운영
17. ~ 21. (생략)	16. ~ 20. (현행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신설>	22. 시정 동영상 및 사진자료 확충 관리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④ (생략)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u>
4. ~ 19. (생략)	5. ~ 20. (현행 제4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창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u>	<삭제>
7. ~ 9. (생략)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u>
⑭ (생략)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경제정책실에 <u>경제일자리기획관·신산업정책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뷰티패션산업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전략산업기반과·국제교류과·금융투자과·바이오AI산업과</u> 를 둔다.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 ----- <u>경제일자리기획관·창조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창업정책과·대학창업과·금융투자과·첨단산업과·창조산업과·뷰티패션산업과·국제교류과·산업입지과</u> -----.

현행	개정안
② 경제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u>신산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국제교류과장·금융투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바이오AI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생략) ④ 신산업정책관은 국제협력 및 신산업 관련 사무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신설> <신설> 17. (생략) ⑥ (생략) ⑦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② ----- ----- ----- ----- <u>창조산업기획관</u> ----- -----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대학창업과장·금융투자과장·창조산업과장·국제교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뷰티패션산업과장·산업입지과장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창조산업기획관은 창조산업 및 국제협력</u> ----- -----. ⑤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전략산업 선정 및 계획 수립 총괄</u> 18. <u>로봇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u>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7. (현행과 같음) 8. <u>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펀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관리</u> ⑧ <u>대학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u>

현행	개정안
⑧ 뷰티패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5.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6. 도심제조업 혁신거점 및 기반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제조업 및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사항 ⑨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4.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5.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6.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7.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2. 대학 창업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청년 창업 및 대학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대학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 창업기업 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 창업 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서울 지역 대학, 민간기관, 해외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⑫ ----- -----.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뷰티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제조업 ----- 7. 도시제조업 ----- 8. 도시제조업 ----- <삭제>

현행	개정안
8. 영상산업 지원시설,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9.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⑩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신 설> 2.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등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캠퍼스타운 사업 홍보 및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사항 5. 캠퍼스타운 내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조성 7. 역세권 캠퍼스타운 대학·기업 혁신거점 조성 8. 캠퍼스타운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대학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⑪ 전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첨단산업과장----- -----. 1.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울바이오허브 ----- <삭 제> 4.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서울 AI 허브 운영----- ----- 9.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0.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양자 기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⑪ 창조산업과장----- -----.

현행	개정안
1. 전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u>사항 총괄</u>	1. <u>서울 창조산업</u> ----- - <u>사항</u>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u>사항</u>	2. <u>서울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u>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u>사항</u>	3. <u>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시설 운영</u>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u>사항</u>	4. <u>게임·e스포츠 산업 육성 및 e스포츠 경기장 조성·운영</u>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u>사항</u>	5. <u>1인미디어 허브 조성 및 산업 지원</u>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u>사항</u>	6. <u>웹툰·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 시설 조성</u>
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u>사항</u>	7. <u>웹툰·만화·애니메이션 지적재산권</u> ----- -----
8.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u>사항</u>	<삭 제>
9.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u>사항</u>	9. <u>창조산업 전문인력 양성</u>
10.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절에 관한 <u>사항</u>	10. <u>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u> ----- -----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u>사항</u>	<삭 제>
12.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대외협력,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u>사항</u>	<삭 제>
13.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u>사항</u>	<삭 제>
14.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u>사항</u>	<삭 제>
15.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u>사항</u>	<삭 제>

현행	개정안
16. <u>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8. <u>디지털미디어시티(DMC) -----</u>
17. <u>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삭 제>
18. <u>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삭 제>
⑫ (생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생략)	⑨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 <u>바이오AI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⑭ <u>산업입지과장-----</u> -----.
1. <u>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1. <u>산업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u>
2. <u>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u>	2. <u>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u> -----
3. <u>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u>	3. <u>산업단지 지정-----</u> -----
4. <u>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u>	4. <u>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u> -----
5. <u>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u>	5. <u>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u> -----
6. <u>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u>	6. <u>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u> -----
7. <u>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7. <u>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8. <u>AI양재 허브 육성에 관한 사항</u>	8. <u>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u> -----
9. <u>양재R&D 캠퍼스 조성에 관한 사항</u>	9. <u>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u>
10. <u>AI 지원센터 등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	10. <u>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신 설>	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 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대외협력, 입주기업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4.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6.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 한 사항
<신 설>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 및 관 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8.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및 사 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 국에 <u>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 강과·감염병관리과·의료자원과·식품정책과 ·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 둔다.</u>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 <u>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 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식품정책과·감염병 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u> ----- -----.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 사관, 보건연구관으로, <u>보건의료정책과장·스 마트건강과장·정신건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 ·의료자원과장·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의료추진단장은 지방 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u>	② ----- ----- - <u>보건의료정책과장·스마트건강과장·정신건 강과장·감염병관리과장·식품정책과장</u> --- ----- ----- ----- ----- ----- ----- ----- -----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설>	14. <u>의료행정에 관한 사항</u>
<신설>	15. <u>약무행정에 관한 사항</u>
<신설>	16. <u>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u>
<신설>	17. <u>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u>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u>
<신설>	9. <u>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u>
⑧ 의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u>의료행정에 관한 사항</u>	
2. <u>약무행정에 관한 사항</u>	
3. <u>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u>	
4. <u>병상 수급관리 및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u>	
5. <u>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 검사지원, 의료인력지원 및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u>	
6. <u>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u>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u>총무과 · 인사과 · 인력개발과 · 자치행정과 · 시민협력과 · 대외협력과 · 남북협력과</u> 를 둔다.	제17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 <u>총무과 · 인사과 · 인력개발과 · 자치행정과 · 시민협력과 · 대외협력과 · 평화기반조성과</u> -----.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u>총무과장 · 인력개발과장 · 자치행정과장 · 시민협력과장 · 남북협력과장</u> 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 ·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u>총무과장 · 인력개발과장 · 자치행정과장 · 시민협력과장 · 평화기반조성과과장</u> ----- ----- -----.
③ 제2항의 남북협력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u>평화기반조성과과장</u>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u>	<삭제>
9. (생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10. <u>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u>	<삭제>
11. <u>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u>	<삭제>
12.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u>관한 사항</u>	<삭제>
13. <u>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u>	<삭제>
14. <u>자원봉사활동 · 지원에 관한 사항</u>	<삭제>
15. (생략)	9. (현행 제15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⑧ 시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⑨ (생략) ⑩ 남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⑧ -----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6. 시민의 날 및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9.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0. 국민운동단체 지원 총괄 11.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⑨ (현행과 같음) ⑩ 평화기반조성과장-----.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 <삭제> 3. 평화·통일 안보 교육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5.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개발지원·환경협력 등 개발지원협력 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인도적 지원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② (생략) ③ 미래공간기획관 밑에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두고, 도시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⑤ (생략) ⑥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①·② (생략) ③ 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 <삭제> <삭제> 2.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8조(미래공간기획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미래공간기획담당관, ----- ----- 미래공간기획담당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공공개발사업담당관 ----- ④ 미래공간기획담당관 ----- 1.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건설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6. ----- 수집·보급, 활성화 방안 수립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	8. 건설사업 관련 평가업무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시공평가 및 하자발생보고에 관한 사항	9.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별점 제도 운영	10. 건설부실 근절대책 총괄(공공·민간)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18. 건설기술심의 사후평가 및 설계안전 총괄	18. 설계심의 이행관리 자문에 관한 사항
19. ~ 24. (생략)	19. ~ 24. (현행과 같음)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신속통합기 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를 둔다.	제21조(도시공간본부에 두는 과) ① 도시공간본 부에 도시공간기획관·도시공간전략과·도시 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도시재창조과· 신속통합기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 지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 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 장·신속통합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 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공간본부장----- ----- 도시공간기획관은 지 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으로, 도시공간전략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 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재창조과장·신속통합 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 --- -.
<신설>	③ 도시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정책, 도시계획 정책,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시관리정책, 도시계획시설 정책, 토지관리정 책 등에 관하여 도시공간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도시재창조과장-----.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1. 녹지생태도시 재창조 전략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3. 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역세권활성화 전략 -----
4.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도심 기본계획 -----
5.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삭 제>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7.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삭 제>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10.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 에 관한 사항	<삭 제>
11.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현행	개정안
14.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생활권계획의 수립 조정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생활권계획의 실행 및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8.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삭 제>
19.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⑤ [제6항으로 이동]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정책결정 및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도시공간계획의 수립·조정 7. 입체·복합도시 조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도시공간 사업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개발 기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현행	개정안
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⑦·⑧ (생략) ⑨ 시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항권역 고도제한 기준 및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운영·관리,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보행일상권 조성기준 수립·조정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⑦ ----- -----. 1. ~ 9. (현행과 같음) 10.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11.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⑨·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⑪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8. ~ 10. (생략) 11. 도시생태계 보전계획수립 및 <u>보전에</u> 관한 사항 12. ~ 18. (생략) 19. <u>입체적 공간이용의</u> 계획·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0. (생략) ⑩ (생략) 제22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균형발전본부에 <u>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도심재창조과·도시정비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광화문광장사업과·동남권추진단을</u> 둔다. ②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도시정비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도심재창조과장·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남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u> 보한다. ③·④ (생략) ⑤ <u>도심재창조과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학교(폐교, 이적지, 복합화, 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및 전략적 활용에 관한 사항 9. ~ 11.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2. ----- 생태포럼에 --- 13. ~ 19. (현행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20. <u>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공간이용</u> ---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2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 ----- <u>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도시정비과·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광화문광장사업과를</u> ----- -----. ② ----- ----- ----- <u>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정비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u>----- ----- <u>서부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u>-----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도시정비과장</u>----- -----.

현행	개정안
1. <u>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관한 사항</u>	1. 「 <u>도시개발법</u> 」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2. <u>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u>서울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u>	3. <u>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u> -----
4. <u>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u>	4. <u>영등포 경인로·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u>
5. <u>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5. <u>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u>
6. <u>서울도심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6. <u>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u> -----
<신 설>	7. <u>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u>
7. (생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10. <u>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u>
8. <u>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u>	8. <u>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조성에 관한 사항</u>
<신 설>	11. <u>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u>
⑥ <u>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⑥ <u>동남권사업과장</u> -----.
1. <u>서울도심 외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1. <u>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u>
2. 「 <u>도시개발법</u> 」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u>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3.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u>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4. <u>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4. <u>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u> -----

현행	개정안
5. 영등포 경인로·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9.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서울형 타운메니지먼트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동남권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u>운영기획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및 대기질통합분석센터</u>를 둔다. ② 운영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u>물환경연구부장·생활환경연구부</u>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u>지방환경연구관</u>으로,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제48조 (생략) 제49조 (생략) 제50조(대기질통합분석센터) ① 대기질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제50조의2 (생략) 제54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③ 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제41조(하부조직) ① ----- ----- <u>운영기획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물환경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u>----- --. ② ----- ----- ----- ----- <u>물환경연구부장·생활환경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u>----- ----- ----- ----- ----- ----- <u>지방환경연구관</u>----- ----- -----. 제48조·제49조 (현행 제47조 및 제48조와 같음) 제50조 (현행 제49조와 같음) 제47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 -----. 1. ~ 11.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 (현행 제50조의2와 같음) 제5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8. <u>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8. <u>시민 및 학생들의 농업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u> -----
9. <u>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u>	9. <u>도시농업전문가회</u> ----- -----
10. <u>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u>	10. ----- <u>학교원에프로그램 운영</u> -----
<신 설>	11. <u>치유농업 육성 및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u>
11. (생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u>	3. <u>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4-H회</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곤충산업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u>
<신 설>	8. <u>전통음식교육 및 농업·농촌 전통문화 계승, 소비자 농업에 관한 사항</u>
<신 설>	9. <u>서울시 반려식물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농업인 기술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기타</u> -----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0조-----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0조-----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절 <u>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u>	제2절 <u>서울아리수본부</u>
제73조(본부장) <u>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u> (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3조(본부장) <u>서울아리수본부장</u> ----- ----- -----.
제75조(하부조직) ① <u>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u> 에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급수부·생산부·시설부를 두고 부분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둔다.	제75조(하부조직) ① <u>서울아리수본부</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수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u>	<삭제>
12. (생략)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요금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계약심사에 관한 사항</u>	<삭제>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현행	개정안
1. 상수도시설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생략) 3. 상수도 배관관리 및 배급수에 관한 사항 4. 송수관·배수관 부설계획 및 지도감독 <신설> 5. (생략) 6. 워터나우 시스템 및 통합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8. ~ 11. (생략) <신설> ⑦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의 공사관리 3. 상수도 안전관리 총괄 및 공사품질에 관한 사항 <신설> 4. (생략) <신설> 5.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 수도정비계획 ----- 2. (현행과 같음) 3. 상수도 배급수 운영 및 상수도관로 교체, 갱생, 신설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 5.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상수도관망시설의 세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급수탑·소화전 등) 위탁업무 8. ~ 11. (현행과 같음) 12. 음수대 및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⑦ ----- ---. 1. (현행과 같음) 2. 송수관·배수관·급수관 정비사업----- ----- <삭제> 4.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4호와 같음) 10.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 - 배수지·아리수울립터 유지관리-----

현행	개정안
6. 취수·송수 유량계 및 구역유량계에 관한 사항 7. (생략) 8. (생략) 9.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략) 11. 상수도 건설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리정보시스템·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⑧ 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안전 분야 점검 2. (생략) 3.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등 공직기강 점검 <신설> 4. (생략) 제79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 및 원수관리과를 둔다.	6. 정수장·배수지 등 공사----- ----- 8. (현행 제7호와 같음) 3.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5.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상수도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12.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⑧ ----- -----. 1. 상수도 안전관리 총괄 및 점검 2. (현행과 같음) 3. ----- --- 점검 및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9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 ----- -----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제117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③ 품질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 품질관리의 <u>적정성</u>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④ ~ ⑥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u>수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u> 제117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u> 2. ----- <u>적절성</u> ----- ----- -----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41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 (4·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1 → 4급 +1)

나.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다.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직급 간 조정

－ ① 도시공간본부 실무인력 보강 ② 시민건강국 및 행정국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③ 주택정책실 및 기술심사담당관 부실공사 대응 실무인력 보강

④ 직급체계 개편 직렬·직급 조정, 관리운영직 조정 등

－ 5급 +41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명, 9급 △35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41	429	1,148	5,186	226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683	420	370	5,003	224
-------	--------	-------	-----	-----	-------	-----

같은 표 4급 소계란, 기술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59	154	19	8	70	8
기술서기관	65	25			40	

같은 표 4·5급 소계란,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급 소계	8	8				
서기관또는 행정사무관	6	6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공업란, 간호란, 환경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관란, 공업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공업·환경또는시설란 아래 공업·시설또는녹지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아래 방재안전또는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급 소계	1,585	1,079	56	58	338	54
행정	746	543	52	26	77	48
사회복지	4	3			1	

공업	73	44			28	1
----	----	----	--	--	----	---

간호	22	16			6	
----	----	----	--	--	---	--

환경	12	11				1
----	----	----	--	--	--	---

시설	215	143			71	1
----	-----	-----	--	--	----	---

방재안전	2	2				
------	---	---	--	--	--	--

방송통신	22	19		1	2	
------	----	----	--	---	---	--

행정또는시설	70	56			11	3
--------	----	----	--	--	----	---

행정또는학예연구관	15	6			9	
-----------	----	---	--	--	---	--

공업또는시설	21	9	1	1	10	
--------	----	---	---	---	----	--

공업·시설또는복지	1				1	
-----------	---	--	--	--	---	--

방재안전또는 공업	1	1				
--------------	---	---	--	--	--	--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사회복지란, 전산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학예연구사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또는전산란, 전산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녹지또는시설란 아래 보건또는환경란을 삭제한다.

6급 소계	3,726	1,940	176	110	1,396	104
행정	1,440	887	147	44	287	75
세무	53	51	1			1
사회복지	27	24			3	
전산	101	75	3	3	17	3
공업	353	109	6	5	231	2
녹지	75	39			36	
간호	152	13			139	
의료기술	46	2		3	41	
환경	51	29		15	7	
시설	601	342	3	2	236	18
방송통신	59	35	3	2	19	

시설관리	42	11			31	
운전	40	22	1	1	16	

행정또는시설	47	45			2	
--------	----	----	--	--	---	--

행정또는학예연구사	24	10			14	
행정·공업또는시설	77	69			7	1

행정또는전산	10	7	1		2	
전산또는시설	4	4				

방재안전또는시설	18	16			2	
----------	----	----	--	--	---	--

통신운영	9	3		1	5	
------	---	---	--	---	---	--

사무운영	25	6	1	2	15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세무란, 전산란, 방호란, 공업란, 녹지란, 간호란, 의료기술란, 보건란, 환경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방재안전또는공업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0	1,288	123	131	1,682	56
행정	1,221	650	88	58	383	42

세무	31	30	1			
----	----	----	---	--	--	--

전산	137	79	4	10	43	1
방호	33	8	4	4	17	
공업	407	22	6	10	367	2
녹지	92	12		2	78	
간호	140	7		3	130	
의료기술	41	2		1	38	
보건	16	14			2	
환경	34	6		16	12	
시설	542	230	3	5	296	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0	34	3	4	19	
위생	6	1		2	3	
시설관리	4	2			2	
운전	53	11	1	2	39	
행정또는시설	34	31			2	1

방재안전또는공업	1				1	
전기운영	39	3			36	
기계운영	54	3	1		50	
사무운영	40	6	2	1	31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방호란, 공업란, 간호란, 환경란, 방송통신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097	141	38	58	859	1
행정	104	20	7	11	66	
방호	87	28	6	3	50	
공업	99	5	2	4	88	
간호	113				113	
환경	18	1			17	
방송통신	15	7		2	6	
시설관리	154			1	153	
운전	89	14	3	11	61	

전기운영	21	1			20	
기계운영	23	1		1	21	
농림운영	5			1	4	
사무운영	122	42	13	17	49	1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시설관리란, 운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532	5	3	1	523	
행정	16	1	1		14	
공업	53	1			52	
시설관리	331	1		1	329	
운전	6				6	

같은 표 연구직 계란,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410	28		199	183	
연구사 소계	337	22		157	158	
학예연구	101	17		2	82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 · 직렬별 정원표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4,710	429	1,149	5,216	226	총 계	11,730	4,741	429	1,148	5,186	226
(생략)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2	4,654	420	371	5,033	224	일반직 계	10,700	4,683	420	370	5,003	224
(생략)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258	153	19	8	70	8	4급 소계	259	154	19	8	70	8
(생략)							(현행과 같음)						
기술서기관	64	24			40		기술서기관	65	25			40	
(생략)							(현행과 같음)						
4·5급 소계	9	9					4·5급 소계	8	8				
서기관또는행정사 무관	7	7					서기관또는행정사 무관	6	6				
(생략)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1,544	1,049	54	57	337	47	5급 소계	1,585	1,079	56	58	338	54
행정	725	532	50	25	76	42	행정	746	543	52	26	77	48
사회복지	3	2			1		사회복지	4	3			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68	39			28	1	공업	73	44			28	1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21	15			6		간호	22	16			6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10	10					환경	12	11				1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	207	135			71	1	시설	215	143			71	1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1	18		1	2		방송통신	22	19		1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71	57			11	3	행정또는시설	70	56			11	3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 관	14	5			9		행정또는학예연구 관	15	6			9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시설	22	9	1	1	11		공업또는시설	21	9	1	1	10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환경또는시설	4				4		공업·환경또는시설	4				4	
칸 신설							공업·시설또는녹지 (칸 신설)	1				1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시설	7	7					방재안전또는시설	7	7				
칸 신설							방재안전또는공업 (칸 신설)	1	1				
(생략)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682	1,919	178	109	1,372	104	6급 소계	3,726	1,940	176	110	1,396	104
행정	1,422	885	148	43	271	74	행정	1,440	887	147	44	287	75
세무	54	51	2			1	세무	53	51	1			1
사회복지	26	23			3		사회복지	27	24			3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	102	75	4	3	17	3	전산	101	75	3	3	17	3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351	110	6	5	228	2	공업	353	109	6	5	231	2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	73	38			35		녹지	75	39			36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147	13			134		간호	152	13			139	
의료기술	44	2		3	39		의료기술	46	2		3	41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50	29		15	6		환경	51	29		15	7	
시설	584	326	3	2	235	18	시설	601	342	3	2	236	18
(생략)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57	35	2	2	18		방송통신	59	35	3	2	19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설관리	42	8			34		시설관리	42	11			31	
운전	39	22	1	1	15		운전	40	22	1	1	16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46	44			2		행정또는시설	47	45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학예연구 사	25	11			14		행정또는학예연구 사	24	10			14	
행정·공업또는시설	78	70			7	1	행정·공업또는시설	77	69			7	1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전산	8	6			2		행정또는전산	10	7	1		2	
전산또는시설	3	3					전산또는시설	4	4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또는시설	1				1		녹지또는시설	1				1	
보건또는환경	1					1	간삭제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시설	17	15			2		방재안전또는시설	18	16			2	
(생략)							(현행과 같음)						
통신운영	15	5	1	1	8		통신운영	9	3		1	5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26	6	1	2	16	1	사무운영	25	6	1	2	15	1
7급 소계	3,327	1,309	123	133	1,701	61	7급 소계	3,280	1,288	123	131	1,682	56
행정	1,239	661	90	59	382	47	행정	1,221	650	88	58	383	42
(생략)							(현행과 같음)						
세무	30	30					세무	31	30	1			
(생략)							(현행과 같음)						
전산	138	80	4	10	43	1	전산	137	79	4	10	43	1
(생략)							(현행과 같음)						
빙호	34	8	4	4	18		빙호	33	8	4	4	17	
공업	409	24	6	10	367	2	공업	407	22	6	10	367	2
(생략)							(현행과 같음)						
녹지	90	11		2	77		녹지	92	12		2	78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간호	141	8		3	130		간호	140	7		3	130	
의료기술	43	2		1	40		의료기술	41	2		1	38	
보건	17	15			2		보건	16	14			2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35	7		16	12		환경	34	6		16	12	
시설	545	234	2	5	296	8	시설	542	230	3	5	296	8
방재안전	2	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55	30	3	5	17		방송통신	60	34	3	4	19	
위생	7	1		2	4		위생	6	1		2	3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8	4			4		시설관리	4	2			2	
운전	45	11	1	2	31		운전	53	11	1	2	39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35	32			2	1	행정또는시설	34	31			2	1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공업	2	1			1		방재안전또는공업	1				1	
(생략)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40	3			37		전기운영	39	3			36	
기계운영	58	3	1		54		기계운영	54	3	1		50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60	6	2	1	51		사무운영	40	6	2	1	31	
8급 소계	1,102	142	38	59	860	3	8급 소계	1,097	141	38	58	859	1
행정	110	21	7	12	69	2	행정	104	20	7	11	66	
(생략)							(현행과 같음)						
방호	86	28	6	3	49		방호	87	28	6	3	50	
공업	97	5	1	4	87		공업	99	5	2	4	88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118				118		간호	113				113	
(생략)							(현행과 같음)						
환경	19	1			18		환경	18	1			17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방송통신	16	7		2	7		방송통신	15	7		2	6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117	1		1	115		시설관리	154			1	153	
운전	98	14	3	11	70		운전	89	14	3	11	61	
(생략)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25	1	1		23		전기운영	21	1			20	
기계운영	34	1		1	32		기계운영	23	1		1	21	
(생략)							(현행과 같음)						
농림운영	6			1	5		농림운영	5			1	4	
(생략)							(현행과 같음)						
사무운영	129	42	13	17	56	1	사무운영	122	42	13	17	49	1
9급 소계	567	5	3	1	558		9급 소계	532	5	3	1	523	
행정	31	1	1		29		행정	16	1	1		14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57	1			56		공업	53	1			52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346	1		1	344		시설관리	331	1		1	329	
운전	7				7		운전	6				6	
(생략)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408	26		199	183		연구직 계	410	28		199	183	
(생략)							(현행과 같음)						
연구사 소계	335	20		157	158		연구사 소계	337	22		157	158	
학예연구	99	15		2	82		학예연구	101	17		2	82	
(생략)							(현행과 같음)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